

변경 대비표

1. 해당 투자신탁명 : 우리G Best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22.05.19 (목)

3. 변경 사유 :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21.10.2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른 문구 반영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1.10.21 자본시장법 개정 에 따른 용어 변경	매입방법/환매방법: 제 X 영업일	매입방법/환매방법: X 영업일
요약정보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22.02.28 기준	2022.03.31 기준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2022.03.02 기준	2022.05.01 기준
운용전문인력	2022.03.02 기준	2022.05.02 기준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1.10.21 자본시장법 개정 에 따른 용어 변경	매입방법/환매방법: 제 X 영업일	매입방법/환매방법: X 영업일
요약정보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22.02.28 기준	2022.03.31 기준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2022.03.02 기준	2022.05.01 기준
운용전문인력	2022.03.02 기준	2022.05.02 기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2022.03.02 기준	2022.05.02 기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2022.03.02 기준	2022.05.02 기준

<p>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p>		
<p>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투자대상 (투자대상의 종류/투자한도/투자대상의 조건)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②채권</p>	<p>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p>	<p>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p>
<p>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투자대상 (투자대상의 종류/투자한도/투자대상의 조건)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③자산유동화증권</p>	<p>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②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p>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 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 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 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 산)이 22.54%으로 6 개의 투자위험등 급 중 위험도가 2 등급(높은 위험)으 로 분류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 산)이 22.96% 으로 6 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위험도가 2 등급(높은 위험) 으로 분류됩니다.
12.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 자재산의 평가 나.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3)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 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 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 의 기준가격. 단,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 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 최근 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단,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 가기준일 전날의 최종시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 수 및 비용	2021.05.01 기준	2022.05.01 기준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16 기(2021.05.01) 기준	제 17 기(2022.05.01) 기준
제 4 부.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운용자산 규모	2022.03.02 기준	2022.05.02 기준
3.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나.주요업무 (1)주요업무	-	⑩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 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 일치여부 확인
6.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회사의 개요	KIS 채권평가	KIS 자산평가